

##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심사경과

### 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6. 6. 15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6. 21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

나. 내용

○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용어 개정

○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| 답변 내용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조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금지 내용 규정<br/>삽입 가능여부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 폐기물을 현재 소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</li> </ul>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기물소각장을 위탁 운영할 것인지?</li> </ul>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 폐기물소각장 운영체계가 한시적인 적재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민간위탁함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</li> </ul> |

4. 토론요지 :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개정사항이고 폐기물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사항 없음

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120호     |
| 의 결   | 96. 6. 28 |
| 년 월 일 | (제46회)    |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5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(95. 8. 4 법률 제4907호)·폐기물관리법시행령(96. 1. 19 대통령령 제14897호)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(96. 2. 5 환경부령 제18호)으로 폐기물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변경 및 폐기물소각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
 주요골자

## ○ 용어의 정의 변경

- 가연성 일반폐기물 →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
- 특정폐기물 → 지정폐기물

## ○ 폐기물소각시설 관리·운영 위탁대상

-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-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 5개의 단체 또는 개인

##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“일반폐기물”을 각각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며,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4조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특정폐기물”을 “지정폐기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“별표 8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”을 “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”으로 하고, 동항단서 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

제9조제1항·제2항 및 제10조제1항·제2항 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  2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
  3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
  4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
  5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- ②소각시설의 위(수)탁에 따른 계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| 현<br>황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로 반입되는 <u>일반폐기물</u>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“소각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상 <u>일반폐기물</u> 중 가연성 <u>일반폐기물을</u>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② “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”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<u>일반폐기물을</u> 말한다.</li> <li>③ “소각시설사용자”라 함은 가연성 <u>일반폐기물을</u>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④ “폐기물운반차량”이라 함은 가연성 <u>일반폐기물을</u>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.</li> <li>⑤~⑥(생략)</li> </ul> <p>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종류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시설용량인 1일 200톤을 초과하여 소각할 수 없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.....<br/> .....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 .....<br/> .....</p> <p>제2조(정의) .....<br/> ① .....<br/> 폐기물.....폐기물 .....<br/> ②.....폐기물 .....폐기물 .....폐기물....<br/> .....<br/> ③ .....폐기물 .....<br/> .....<br/> ④ .....폐기물 .....<br/> .....<br/> ⑤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,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</p> |

| 현<br>황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(생략)<br><br>1.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 <u>일반폐기물을</u> 구청장이<br>직접 수거하고자 할 경우<br><br>2. (생략)<br><br>②시장은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<u>일반폐기물을</u> 사업소에<br>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<br>아니하고 기존 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<br><br>1.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<br><br>2. ~3(생략) | 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(현행과 같음)<br><br>1. ..... <u>폐기물</u> .....<br>.....<br><br>2. (현행과 같음)<br><br>② ..... <u>폐기물</u> .....<br>.....<br>.....<br><br>1. ..... <u>폐기물</u> .....<br><br>2. ~3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폐기물의 분리) 시장은 <u>특정폐기물</u>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<br>을 분리하여 <u>특정폐기물</u>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 예방과 재활용품<br>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 | 제5조(폐기물의 분리) ..... <u>지정폐기물</u> .....<br>..... <u>지정폐기물</u> .....<br>.....  |
| 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(생략)<br><br>②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“별표 9”의<br>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<br>야 한다.<br><br>③~⑥(생략)  | 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(현행과 같음)<br><br>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“별표 8”의<br>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<br>다.<br><br>③~⑥(현행과 같음)  |
| 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구청장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<br>일반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)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   | 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.....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<br>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.....   |

| 현<br>황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<p>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<u>일반폐기물</u>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8조(반입의 제한) ①(생략)</p> <p>1.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</p> <p>2. 불연성 일반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</p> <p>3. ~5(생략)</p> <p>②~④(생략)</p> <p>제9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) ①제7조제1항에 의한 반입허가대상자로서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<u>일반폐기물</u>운반차량은 시장에게 <u>일반폐기물</u> 운반차량출입증(이하 “출입증”이라 한다) 및 <u>일반폐기물</u>운반차량계량카드(이하 “계량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<u>일반폐기물</u>운반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⑤(생략)</p> |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폐기물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반입의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</p> <p>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</p> <p>3. ~5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) ① .....</p> <p>..... 폐기물 .....</p> <p>..... 폐기물 .....</p> <p>..... 폐기물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 폐기물 .....</p> <p>.....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<br>황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제10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) ① 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는자가 <u>일반폐기물</u>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미신청 시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.<br>②(생략)<br>1. ~2(생략)<br>3. <u>일반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</u><br>4. (생략)<br><u>신설</u> | 제10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) ① .....<br>..... <u>폐기물</u> .....<br>.....<br>.....<br>②(현행과 같음)<br>1. ~2.(현행과 같음)<br>3. <u>폐기물</u> .....<br>.....<br>4. (현행과 같음)<br>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br>1. <u>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</u><br>2. <u>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</u><br>3. <u>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</u><br>4. <u>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</u><br>5. <u>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</u><br>② 소각시설의 위(수)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<br>제14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3조와 같음) |
| 제13조(시행규칙) (생략)  |   |